

아리아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620호 2023. 3. 6. (월)

【조 례】

- 정선군 조례 제2943호 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
조례.....1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조 례

제286회 정선군의회(2023. 2. 17.) 및 제1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3. 2. 24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3월 6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943호

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

제1조(「정선군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4호 본문 중 “폐광지역(군을 포함하여)”를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(정선군을 포함하여 동해시, ”로 한다.

제2조(「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중 “폐광지역(삼척시)”을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(동해시, 삼척시)”로 한다.

제3조(「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폐광지역”을 각각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중 “태백시”를 “동해시, 태백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폐광지역”을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폐광지역 주민(정선군)”을 “폐광지역·강원남

부권 시군 주민(정선군, 동해시” 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 2호 중 “폐광지역” 을 각각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” 으로 한다.

제5조(「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 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(정선군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) 주민

제6조(「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3제2호 중 “폐광지역 정선군” 을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(정선군, 동해시” 로, “문경시 거주자” 를 “문경시) 주민” 으로 한다.

제7조(「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7호 본문 중 “폐광지역 주민(태백시” 를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(동해시, 태백시” 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폐광지역” 을 “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제1조(「정선군 공립 박물관 · 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관람료 및 면제) ① (생략)</p> <p>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14. <u>폐광지역(군을 포함하여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의 해당 지역을 말한다)주민</u>. 다만,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.</p>	<p>제10조(관람료 및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(정선군을 포함하여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-----)</u>----- ----- -----.</p>

제2조(「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이용료의 감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. 다만,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.</p>	<p>제9조(이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p>1. (생 략) 2. 폐광지역(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) 주민 3.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 2.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(동해시, 삼척시, 태백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)--- 3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제3조(「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의2(감면) ① 폐광지역 주민, 명예군민, 투표자,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관광객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②제1항에 해당하는 폐광지역 주민, 명예군민, 투표자, 자매결연도시민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폐광지역 주민: 정선군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삭 제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③ 폐광지역 주민, 명예군민, 투표자, 자매결연도시민에 대한 관람료는 [별표 1]에서 정한 감</p>	<p>제7조의2(감면) ①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, 명예군민, 투표자, 자매결연도시민 및 군 관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한 관광객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.</p> <p>②-----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,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: 정선군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, ----- -----</p>

액된 요금 으로 한다. ④ ~ ⑤ (생 략)	----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4조(「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·감면) ① (생 략) ② 폐광지역 주민(정선군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(산막이용료를 제외한다)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 폐광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 2. 그 밖에 폐광지역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</p>	<p>제11조(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·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(정선군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-----)----- ----- ----- ----. -----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----- ----- -. 1. (현행과 같음) 2. 그 밖에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</p>

제5조(「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이용료의 할인) 군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p>	<p>제11조(이용료의 할인) ----- ----- -----</p>

<p>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할인이용료를 적용한다. 이 경우 할인이용료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그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6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(정선군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) 주민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
--	--

제6조(「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」)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의3(시설사용료의 감면) 군립공원의 시설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야영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주민등록상 폐광지역 정선군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 거주자 50퍼센트.(단, 주말, 공휴일은 제외한다)</p> <p>3. ~ 6. (생략)</p>	<p>제12조의3(시설사용료의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(정선군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) 주민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제7조(「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체험료의 면제와 감면) ① · ② (생 략)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 1. ~ 6. (생 략) 7. 폐광지역 주민(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). 단, 그 지역주민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 또는 그 밖에 폐광지역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)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체험료의 면제와 감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주민(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). ----- -----. -----폐광지역·강원남부권 시군 ----- ----- -----.</p>

□ 제안이유

도내 폐광지역 외 선거구 조정에 따라 동해시가 추가된 5개 시·군 상호간에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감면을 통해 폐광지역 및 강원남부권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주요 관광지 감면 대상에 폐광지역 및 강원남부권 주민(동해시) 추가

- 폐광지역·강원 남부권 시군 : 정선군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영월군, 보령시, 화순군, 문경시

※ 동해시, 태백시 : 관련 조례 개정 완료

나. 대상 조례 : 7건

번호	조례명	대상 시설	비고
1	정선군 공립 박물관·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	아리랑박물관(관람료)	문화체육과
2	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	벽스랜드(이용료)	관광과
3	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	화암동굴·모노레일·카트(사용료)	"
4	정선군 휴양단지 관리 조례	도사곡휴양림 야영장(이용료)	"
5	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	케이블카(이용료)	"
6	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	스카이워크, 짚와이어등(사용료)	환경과
7	정선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	목재문화체험장(체험료)	산림과